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9
----------	-----

2023. 3. 24.(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조성태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태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민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 인구문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홍보·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10, 11조)
-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 (안 제14조)
 - (현행) 20명 이내 → (개정) 25명 이내
-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함. (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육아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조례상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8조(인구정책사업) 제1항제2호에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출산육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특히 신청대상 규정에 있어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어려운 출생아동의 경우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신청주의에 따른 지원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함.
- 안 제9조 제4항은 본 조례안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대상, 금액,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육아수당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가 및 유관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해야 할 것임. 특히 출산육아수당의 연령별 지원액을 정함에 있어, 출생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가계 부담 수준 및 정부 지원액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본 조항은 현행 제16조(포럼 등 운영)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조항의 내용 중 '운영'이란 용어는 어떤 조직·기구 등을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뜻으로 상시성을 수반하고 있어 본 조항에 따른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음. 이에 본 용어를 '개최'로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 제9조 및 제30조의2 등²⁾에도 교육

2)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및 홍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권고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본 사업의 추진은 인구정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4조**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³⁾에 따른 도 차원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해당 집행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계획 수립·변경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7조**는 인용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한 것임.

- (현행) 「충청북도 포상 조례」 → (개정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 **안 부칙 제2조(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는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에 관한 제9조의 개정 규정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까지 소급적용을 명시한 것임.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육아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다만, 출산육아수당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 제도가 목표하는 출산·육아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끼친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장제9조를 제19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20명” 을 “25명” 으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교육 사업

제20조(중전의 제17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 를 “**「충청북도 포상조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에 관한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u>인구교육사업</u></p> <p>2. ~ 6. (생략)</p> <p>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관련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제2항의 보조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 ----- ----- -.</p> <p><삭제></p> <p>1. ~ 5.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② <u>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p><삭제></p>
<p><신설></p>	<p>제9조(출산육아수당) ① <u>도지사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 부</u></p>

	<p>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신 설>	제4장 보칙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p>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교육 사업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p>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⑦ (생략)</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 ---- 25명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생략)</p>	<p>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3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생략)</p>	<p>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
<p>제15조 (생략)</p>	<p>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4장 보칙</p>	<p><삭제></p>
<p>제16조(포럼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율적 대응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p>

<p>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할 수 있다.</p>
<p>제17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20조(포상) ----- ----- ----- 「충청북도 포상조례」----- -----.</p>

관계 법령 발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